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16 선고 2019가단4848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
담당변호사 홍성용, 서가임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수

변론 종결 2020. 9. 18

판결 선고 2020. 10. 16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,758,902원 및 그중 8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7.1. 부터 2019. 11. 5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 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○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. 8. 25. D으로부터 포천시 E 및 F 토지 지상에 오피스 텔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고 한다)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였고, D은 2016 . 8. 31.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8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○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. 8. 29. 피고 회사와, 보험계약자를 피고 회사, 피 보험자를 D, 보험가입금액을 88,000,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 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D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(계약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
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 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○ D은 2017 . 1. 5.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실제로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지도 못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 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.

○ D은 2017 . 1. 19. 계약금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한 돈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,원고는 2017. 8. 9. D에게 보험금 8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○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58552호로 이 사건 보증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고, 위 소송에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도 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닌 G임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.8. 23.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보 험금 80, 000, 000원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8. 6. 30. 까지의 지연손해금 7, 758, 902원을 합한 87, 758, 902원 및 그중 80, 000, 000원에 대하여 2018. 7. 1. 부터 2019. 11. 5.까지는 연 9%D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○ 이 사건 공사는 G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D은 허위의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.

○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 하여 확인하고 조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D에게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나. 판단

1)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分%,,,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%,그다음날부터 2018. 6. 30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연 9%임은 피고들이 다투지 않는다.

○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부 존재 확인 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따라서 그 기판력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구상금 지급 채무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 고,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, 피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○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에 명시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않았고 그에 대하여

원고가 조사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가 제출한을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없다.

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신현일